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0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8.

발 의 자:조승래·강병원·강은미

김민기 · 김병기 · 김승원

김진표 • 도종환 • 박성준

서동용 · 서영교 · 서영석

설 훈·소병철·송기헌

신동근 • 양경숙 • 양정숙

양향자 • 이광재 • 이상헌

이성만 · 이용빈 · 이탄희

최종윤 의원(25인)

제안이유

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정(2016. 6. 30. 시행) 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 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,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 하도록 하였음.

군 내에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총기 난사, 후임병 폭행 사망 및 자살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여 군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함.

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하며,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"군인등", "군인권침해"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・준사관・부사관・병(兵), 사관생도・사관후보생・준사관후보생・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,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(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).
- 나. 군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 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제5항).
- 다.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인권침해에 한정하여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4조제1항).
- 라.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,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예방 및

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(안 제50조의2 신설).

- 마.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인권보호위원회를 둠(안 제50조의3 신설).
- 바.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군인권보호관, 위원,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, 국방부장관은 군사·외교·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등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0조의4 신설).
- 사.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(사망의 원인이 명백 히 자연사인 경우는 제외)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진행 중인 해당 사건 관련 조사·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0조의6 신설).
- 아.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그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경우에 각하하도록 하는 등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를 규정함 (안 제50조의7 신설).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"군인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및 병(兵)
 - 나.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사관생 도·사관후보생·준사관후보생·부사관후보생,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·보충역, 군무원
- 7. "군인권침해"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.
- 8. "군인권보호관"이란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4 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.
-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.

제34조제1항 중 "수사기관의 장"을 "수사기관의 장(군인권침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한다.

제4장의2(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9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

- 제50조의2(군인권보호관) ①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.
 - ②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.
- 제50조의3(군인권보호위원회)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둔다.
 -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.
 - ③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구성, 전문위원회, 회의 의사·의결정 족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제2항을 준 용한다.
- 제50조의4(군부대 방문조사) ① 위원회(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.

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, 위원,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(「국군조직법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방문하여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, 일시,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·외교·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 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이유가 소명된 경우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, 중단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.
- ④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,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·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
- 제50조의5(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) 국방부장관은 군 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·전화·인터넷 등 진정 제기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,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.

- 제50조의6(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·수사의 입회) ① 국방부장관은 군 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(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자연사인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당 사건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수사나 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제50조의7(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)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각하한다.
 - ②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의 경우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 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, 범죄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 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50조의8(피해자 보호조치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 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국방부장관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50조의9(준용규정)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, 군인 권침해 사건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을 제외하고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3조제1항제1호 중 "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임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한다.

제3조(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군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진정의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"군인등"이란 다음 각 목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
	<u>말한다.</u>
	가.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
	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1호
	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
	<u>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및 병</u>
	<u>(兵)</u>
	나.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
	관한 기본법」 제3조에 따
	른 사관생도·사관후보생 <u>·</u>
	준사관후보생·부사관후보
	생,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
	는 예비역·보충역, 군무원
<신 설>	7. "군인권침해"란 제30조제1항
	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
	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
	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
	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
	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.

제26조(인권교육과 홍보) ① ~ 7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⑤・⑥ (생략)

제34조(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 조조)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도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의뢰할수 있다.

8. "군인권보호관"이란 「군인
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
법」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
호관을 말한다.
제26조(인권교육과 홍보) ① ~
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
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
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
<u>다.</u>
$\underline{6} \cdot \underline{7}$ (현행 제5항 및 제6항
과 같음)
제34조(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
조) ①
수사기관의 장(군인권침
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
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. 이
<u>하 이 조에서 같다)</u>

②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 권보호위원회

제50조의2(군인권보호관) ① 군인 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 위원이 겸직한다.

- ②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 다.
- 제50조의3(군인권보호위원회)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 권보호위원회를 둔다.
 -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.
 - ③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원조직을 둘 수 있 다.
 - ④ 그 밖에 군인권보호위원회 의 구성, 전문위원회, 회의 의 사·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

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 13조제2항을 준용한다.

- 제50조의4(군부대 방문조사) ① 위원회(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, 위원,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(「국군조직법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, 일시,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·외교·대 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 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 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 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이유가 소명된 경우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, 중단 사 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 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.

④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 인권보호관, 위원 또는 소속 직 원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·제 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

제50조의5(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) 국방부장 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·전화·인터넷등 진정 제기를 위한 효율적인수단을 제공하고,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.

제50조의6(사망사건의 통보와 조 사·수사의 입회) ① 국방부장관 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(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자

연사인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수사나 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50조의7(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)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 터 1년이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

지난 경우에는 각하한다.

②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의 경우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, 범죄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50조의8(피해자 보호조치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 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

제6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호의 1 제6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 -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-

- 1. 정당한 이유없이 <u>제24조제1</u> <u>항의 규정에 의한</u>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2. 3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제50조의9(준용규정) 군인권보호
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
무, 군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등
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특별히
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2
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준
용한다.

∥63조(과태료) ①	-
	_

1				<u>제24조</u>	제1
	항-	또는	제50조의]4제1항에	따
	른-				

- 2. 3. (현행과 같음)
- ② ③ (현행과 같음)